

## 토지재산권행사에 관한 연구(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)

### A Study on the Exercise of Landowner's Property Right(Focused on Urban Development District)

김감래<sup>1)</sup>, Kam-Rae Kim · 김춘오<sup>2)</sup>, Chun-Oh Kim

<sup>1)</sup>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· 공학박사 · 031-330-6411 · E-mail : kam@mju.ac.kr

<sup>2)</sup> 대한주택공사 031-738-3661 · E-mail : ddang@jugong.co.kr

**개요(SYNOPSIS) :**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,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,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·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.

**주요어(Keyword) :** 수분양자, 지적공부, 토지재산권행사, 환지예정지,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

## 1. 서 론

도시개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거 개발형태 및 이용목적에 따라 주거단지, 공업단지, 농업단지, 물류단지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진다. 이러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경비의 재원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진행 중 일반인 등에게 토지를 분양하는데,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 등의 행위를 하여 분양목적을 이루지만 사업준공이 되지 않아 토지에 관한 공부가 없어 완전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. 즉, 동 토지는 지적법에 의거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적정리가 가능하고 또한 등기까지 정리되어야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제공되는 설정이다. 그런 사유로 토지담보대출 또는 거래계약 등의 행위시 정확한 공부(입증자료)가 없어 권리행사에 따른 제약이 부득이하게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.

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환지방식을 적용한 방법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까지 작성하고 결과분석을 하고자 한다.

## 2. 환지방식을 적용한 토지권리행사

환지방식을 적용한 토지권리행사방법이란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을 한 후 환지예정지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.

### 2.1 환지예정도 작성

환지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지구의 종전지적도와 예정지적좌표도를 오버랩한 환지예정도를 작성한다.

## 2.2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

환지계획이란 사업지구의 개발 전 토지(전, 담 등)를 개발완료 후의 토지(대지 등)로 지번, 지목, 면적 등의 토지표시사항을 바꾸어(환지)주는 것을 말하는데, 사업시행자가 환지설계,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,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,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

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전량 매수하기 때문에 환지설계 후 환지계획수립만 하면 된다.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환지예정지지정을 한다.

## 2.3 환지처분

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면 환지예정지지정 된 상태대로 환지처분을 한다.

그리고 등기를 하는 것인데, 본 연구에서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등기를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.

## 2.4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

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건물등기를 한다.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지권등기도 동시에 한다. 환지계획 변경으로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한다.

## 3. 개선시행 사례

### 3.1 사례지구 현황

#### 3.1.1 일반현황

<표1> 사례지구 현황

지구명	필지수		면적(m <sup>2</sup> )		대체승인토지	
	종전	확정	사업	좌표도	필지수	면적(m <sup>2</sup> )
○○지구	42	3	25,227	25,234.7	5	1,7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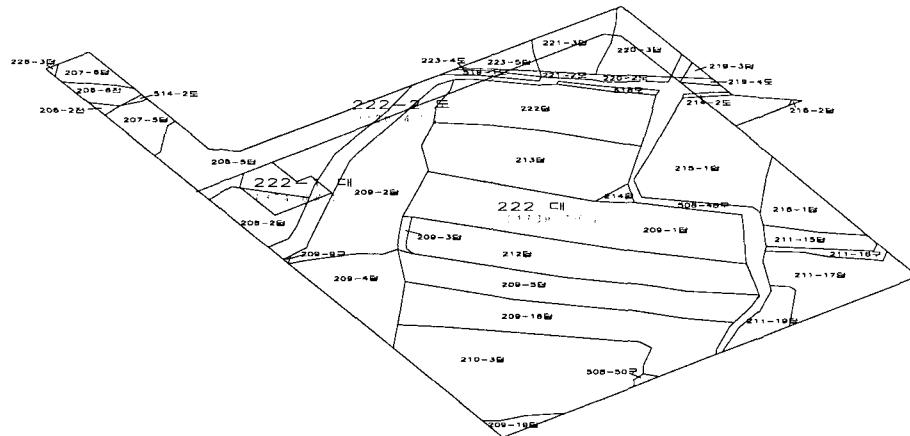
\* 건설호수 90호, 사업기간 : 2000.12.23 ~ 2004.3.31  
종전토지 42필에 도시계획도로 대체승인토지 5필 포함,  
확정토지 3필 : 아파트대지, 상가용지, 도로 각 1필

#### 3.1.2 지번별조서(종전, 환지예정)

개발전의 종전지와 개발 후 확정될 환지예정토지의 지번별조서를 작성한다.

#### 3.1.3 환지예정도 작성

개발전의 종전지적도에 개발 후 확정될 지적도를 중첩(over-lap)한 환지예정도를 작성한다.



<그림1> 환지 예정도

### 3.2 환지계획수립 및 환지예정지지정

사업승인내용과 환지예정도 등을 참고로 먼저 감보율을 계산하여 보고 환지계획을 수립한 다음 환지예정지지정조서를 작성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을 한다. 도시계획도로로 대체승인 된 토지는 별도로 환지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에 유의한다.

※ 감보율계산

$$\text{감보율} = \frac{\text{총전토지전체면적(무상양수토지면적제외)} \times \text{당해획지계획면적}}{\text{총대지계획면적}} \quad (1)$$

식(1)에서 다음과 같이 감보율을 계산하고 환지한다.

#### 3.2.1 아파트대지

환지예정지번 222 대  $21,739.7\text{m}^2$

$$(25,227-1,744=23,483) \times 21,739.7 / (21,739.7+374.6=22,114.3) = 23,085.2$$

$\rightarrow 206-2$  외 35필  $22,995\text{m}^2$  토지를 환지예정지 222번지로 환지

#### 3.2.2 상가용지

환지예정지번 222-1 대  $374.6\text{m}^2$

$$23,483 \times 374.6 / 22,114.3 = 397.8$$

$\rightarrow 208-2$  답  $488\text{m}^2$  토지를 환지예정지 222-1번지로 환지

#### 3.2.3 도로용지

환지예정지번 222-2 도로  $3,120.4\text{m}^2$

감보율에 따라 산출된 면적 등과 관계없이 대체승인 된 토지내역으로 환지

$\rightarrow 508-48$  외 4필  $1,744\text{m}^2$  토지를 환지예정지 222-2번지로 환지

※ 환지예정지지정서 작성

### 3.3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

환지예정지 토지에 집합건물(아파트)이 신축되어 건축물에 관한 표시등기 및 소유권등기 그리고 대지권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것과, 대지권등기 후 환지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.

### **3.3.1 소유권보존등기 (구분건물일괄신청 · 소유권대지권)**

환지예정지 토지에 집합건물 등이 준공되면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번으로 토지표시 또는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다.

### **3.3.2 대지권변경등기**

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고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확정된 토지대장이 작성되어지면 환지예정지 상태에서와 지적확정 된 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그런 경우 집합건축물 부지는 변경된 면적으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## **4. 결과분석**

환지시행인가 및 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업 개별법에서 의제조항이 있고 환지예정도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위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, 본 연구에 의한 제도개선은 법·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.

그러나 각 개별법에 환지계획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, 사권보호를 위해 등기된 토지가 환지예정지 임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, 증명발급을 할 경우 이에 관한 근거 마련도 있어야 하겠다.

## **5. 결론**

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완전한 토지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을 해결하고자 환지방식을 적용한 방법을 제시하고, 실제 한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세부적인 예시까지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.

도시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, 주택건설사업, 재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, 주택건설촉진법, 재개발법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서 각각 환지에 관한 의제조항이 규정되어 있고,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,

도시개발사업 각 개별법에 환지계획 인가에 관한 의제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법령개정과, 사권보호를 위하여 환지예정지 상태에서의 등기임을 알려주는 환지예정지증명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개선시행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.

이상과 같이 현행 법령과 제도로도 환지방식을 적용한 방법으로써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.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등기한 지번과 면적이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결과와 틀리게 등기되었을 때 변경등기로 변경할 수 있지만, 변경원인에 관하여는 미처 예측 못한 여러 경우의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와 상황 설정에 따른 사례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.

## **참고문헌**

1. 신언숙(2000), “집합건물의 등기”, 육법사, pp. 23-135, 155-170, 660-667
2. 대한주택공사(2000), “보상실무”